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369
----------	-------

발의연월일 : 2026. 3. 11.

발 의 자 : 이연희 · 송재봉 · 박정현
김정호 · 안태준 · 김남희
이춘석 · 이광희 · 한민수
임미애 · 염태영 · 서미화
이정문 · 허종식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SNS의 확산으로 청소년 이용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용자의 관심과 체류시간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자동화된 정보추천 알고리즘으로 인해 청소년의 과몰입·중독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정보격차·웹접근성·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42.6%에 달함.

그러나 현행 법령상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직접 제한하는 규정이 부재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 책임을 명확히 한 제도적 장치도 미비한 실정임. 반면 호주·프랑스 등 주요국에서는 알고리즘 규제 및 플랫폼 책임 강화를 중심으로 관련 입법 조치를 잇따라 추진하고 있음.

이에 사회관계망서비스 및 알고리즘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제공자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정보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 시 이용자의 연령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 시 보호자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 제42조의4 및 제70조의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사회관계망서비스”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 간 관계를 형성하고 이용자가 생성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를 공유하거나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5. “알고리즘”이란 어떠한 문제의 해결 또는 의사결정을 위하여 입력된 정보를 기초로 결과물을 이끌어내는 연산·논리·규칙 및 과정을 말한다.

제4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4(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의 청소년 보호) ①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사회관계망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해당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정보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이하 “정보추천 알고리즘”이라 한다)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회관계망서비스제공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자신이 제공하

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회원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회관계망서비스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연령을 확인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은 친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가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70조의2 중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
2. 제4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사용에 있어서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허용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3.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① ----- -----. 1. ~ 13. (현행과 같음) 14. “사회관계망서비스”란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 간 관계를 형성하고 이용자가 생 성한 부호·문자·음성·음향 ·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를 공유하거나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u><신 설></u>	15. “알고리즘”이란 어떠한 문 제의 해결 또는 의사결정을 위하여 입력된 정보를 기초로 결과물을 이끌어내는 연산· 논리·규칙 및 과정을 말한다.
② (생 략) <u><신 설></u>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의4(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의 청소년 보호) ① 제42조의3 제1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 책임 자를 지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사회관계망 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해당 사회

제70조의2(벌칙)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관계망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정보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이하 “정보추천 알고리즘”이라 한다)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회관계망서비스제공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자신이 제공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회원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회관계망서비스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연령을 확인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은 친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가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70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1.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

<u><신 설></u>	<u>하는 자</u> <u>2. 제4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u> <u>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u> <u>사용에 있어서 정보추천 알고</u> <u>리즘을 허용한 자</u>
---------------------------	---